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이 주 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제 개혁추진체계 개선 방안

1판1쇄 인쇄/ 2007년 12월 18일

1판1쇄 발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값 5,000원 / ISBN 978-89-8031-478-2

목 차

I. 서 론 / 7

II. 현 황 / 9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변천 / 9
2. 규제관리시스템의 변천 / 19

III. 문제점 / 24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 24
2. 규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 27

IV. 개선방안 / 33

1.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 33
2.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36

참고문헌 / 42

그림 목차

- 그림 1.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 구성 | 12
- 그림 2.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체계 및 규제심사 | 13
- 그림 3. 노무현 정부 규제개혁추진체계 | 15
- 그림 4. 규제개혁기획단의 조직 | 16
- 그림 5.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혁 추진절차 | 17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I. 서론

- 대대적인 규제개혁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아
 - 대대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고,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업환경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0위 수준(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 체감도가 낮은 원인은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의 미흡, 정부의 개입적 성향과 정책기조, 기업이나 국민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의 과다와 개입요구, 규제개혁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와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집행 태도, 규제에 의해서 형성된 특정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반발, 규제개혁 관리의 미흡 등
 - “더욱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위해서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시스템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효율성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요
 - 그러므로 현재의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규제관리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 목 차:
 - I. 서론
 - II. 현황: 1980년대 이래의 규제개혁추진체계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 왜 현재의 규제개혁추진체계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규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 III. 문제점: 추진체계의 이원화, 입법부를 통한 규제의 우회적 도입, 전문성·인력·예산의 부족, 명목뿐인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체계, 공공부문 개혁의 통합적 관리체계 결여 등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점검, 규제영향분석의 유명무실화, 효과적 규제관리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의 부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식적인 규제개혁 관련 교육·훈련, 규제총량제 및 규제일몰제의 형식적인 시행, 미등록 규제 등 규제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 점검
- IV.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II. 현 황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변천

□ 전두환·노태우 정부: 1982~1992년

○ 전두환 정부:

1982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노동단체 등을 대표하는 민간인들을 위원으로 하여 설치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가 주요 정책과제 46건과 부처 단위로 개선해야 할 자율개선 과제 760건을 선정하여 규제완화 추진¹⁾

○ 노태우 정부:

1990년 정부 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 21인으로 구성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1년에는 민간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반행정과 경제행정 분야로 나누어 규제완화를 추진, 총 893건에 이르는 제도개선 시행²⁾

□ 김영삼 정부: 1993~1997년

○ 규제개혁을 체계적인 행정개혁 작업의 일환이 되게 초석을 놓았음.

1) 김정수(1992)

2) 김일중·홍성중(1994), p.4.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1993. 3: 경제기획원 주관), 행정쇄신 위원회(1993. 5: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 위원회(1993. 9: 상공자원부 주관), 행정규제합동심의회의(1994. 5: 총무처 주관) 등 4개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 설치
- 김영삼 정부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특징:
 - 여러 개의 민·관 합동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성격상 동 추진기구들이 한시적인 기구들로 발족하여 임기 동안 존속
 -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사무 행정조직은 독자적인 정부조직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의 일부 실·국과 과들이 담당하거나, 각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조직
 -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개혁의 제도화에 기여
- 김영삼 정부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 규제개혁 역량의 분산으로 인한 피규제대상인 민간부문의 개혁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부족
- 대안의 모색과 한계:
 -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단일화와 규제개혁 추진기구에서의 민간위원 비율의 대폭 확대. 그러나 단일화는 기존 규제개혁기구의 화학적 통폐합이나 법적·행정적 기속력 확보보다 기존 규제개혁기구들(행정쇄신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상위 기구(규제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역량의 강화를 이루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³⁾

3) 이를 입증하는 한 증거로는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임기 말에 완료한 규제개혁 건

- 규제개혁추진회의는 규제개혁이 행정부에 법적인 기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
 - 이 위원회는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단일화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하여 법률기구화함.
 - 선언적으로 규제개혁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폐기하고 이 내용 가운데 근간을 이루는 규제법정주의,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는 물론 사전심사 시 규제영향평가의 의무화와 규제 존속기간에 대한 명시, 기존규제의 정비의무 부과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규제정비에 따른 예산 및 조직정비를 위한 관계 정부기관의 협조의무 부과 등을 추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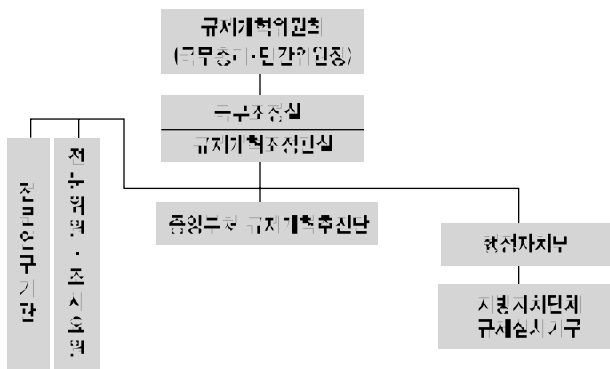
□ 김대중 정부: 1998 ~ 2002년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4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부의 공식조직이고, 규제개혁 업무 담당 행정조직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조정관실로 발족
 -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 12명과 정부 위원 6명 등 20명으로 구성

수가 동 정부 규제완화 총 건수의 4%에 해당하는 171건에 불과한 것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위원회별 규제개혁 품질평가에서도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선정하여 완료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평가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른 위원회들보다 높은 중요성을 가진 과제들을 선정하였으나 규제개혁의 이행정도는 지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민간인 위원들의 대폭적인 보강이나 소관부처의 변경 그리고 규제개혁추진기구의 명목상의 격상 등이 규제개혁 과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평가의 내용은 이주선·한선옥(1999)을 참조할 것.

- 행정보좌조직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 내 규제개혁조정실이 담당하였는데,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상근 행정조직으로 조정관과 3개 심의관실에 11개팀을 운영하였고, 규제개혁 업무만을 담당하는 최초의 정부 내 공식 공무원 조직
-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55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인 10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임명

| 그림 1.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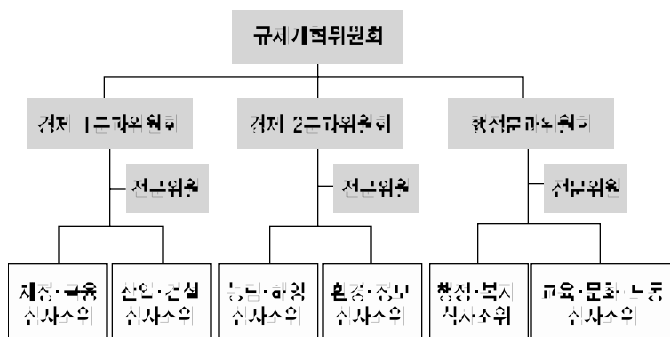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1999), p.35.

○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하부구조

- 중앙정부의 경우 36개 부·처 청에는 규제개혁추진단과 규제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부·처 청의 기획관리실장, 관련 실국장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
 -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당해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담당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규제심사위원회 설치
 - 규제개혁 업무는 행정담당 부시장이나 부시사가 총괄
 - 산하에 대개 10명 내지 20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

| 그림 2.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체계 및 규제심사 |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1999), p.35.

- 운영체계는 경제1, 경제2, 행정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분장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
-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도 부처별 자체정비계획 심사를 위한 한시적 임의조직으로 6개 전문가심사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는 각 부·처·청이 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유관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교 검토의견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
 - 심사는 6개 전문가심사소위원회가 분야별로 진행하여 1차적인 안을 확정 한 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재심하고 여기서도 견해차가 존재하는 안건의 경

우는 본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모든 최종 규제개혁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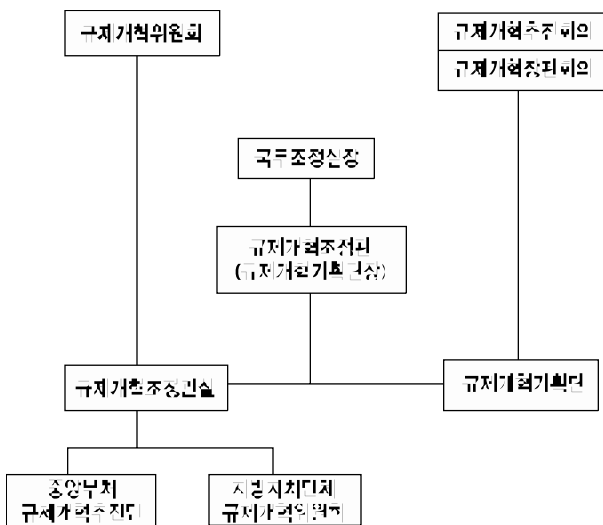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사안과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분류하여 처리절차를 달리함.
 -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정부 각 부·처·청의 여론수렴과 규제도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부·처·청 자체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 각 부·처·청의 심사청구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시행하여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안은 분과위원회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
- 긴급을 요하는 신규규제의 경우에는 각 부·처·청이 심사를 청구하면 분과위원회가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와 의결을 거친 후 결과를 통보하고,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심사의 절차를 따르도록 함.
 - 긴급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부처의 사전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과정은 생략하며, 규제영향분석서는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일시적으로 유예
- 위원회의 신설·강화규제 심의 및 의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부처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 노무현 정부: 2003년 ~ 현재

- 2004년 8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 국무총리 관장 규제개혁장관회의, 그리고 이에 대한 실무추진 한시조직인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병립시키는 추진체계의 이원화를 추구(<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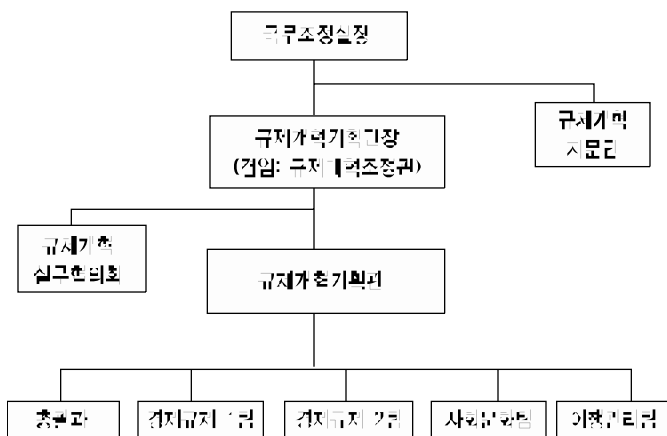
-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었고, 매월 1회 핵심규제 개혁과제에 대한 심의와 각 부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
-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심의 관련 부처 장관들이 그 구성원이며, 일반적인 규제정비 방안을 논의·결정하고,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선정하여 추진한 전략과제 안건들에 대한 심의와 확정을 담당
- 이러한 이원화된 추진체계하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정비대상 규제에 대한 정비를 담당,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존규제들 가운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을 담당

| 그림 3. 노무현 정부 규제개혁추진체계 |



- 규제개혁기획단은 2년 한시조직으로 2004년 8월 출범하였다가 현 정부 임기 말까지 그 활동시한을 연장하도록 2006년 8월에 결정(조직은 <그림 4> 참조)

| 그림 4. 규제개혁기획단의 조직 |



자료: <http://rrtf.go.kr/intro/intro03.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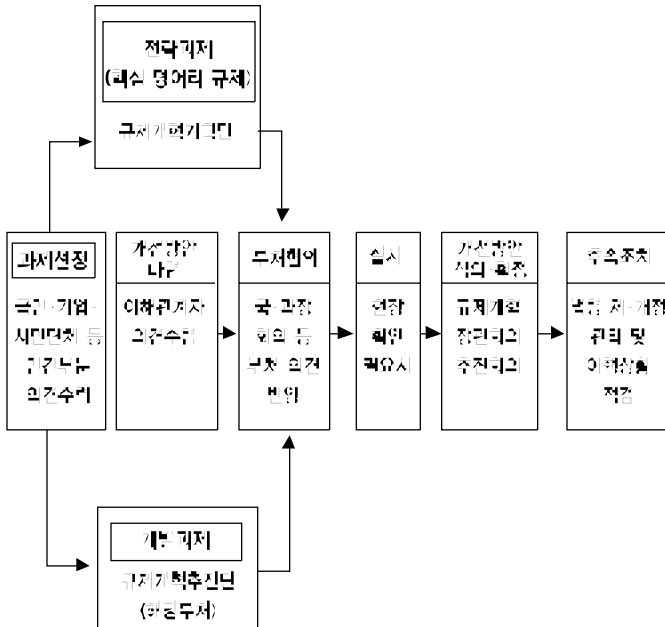
- 출범 후 2006년 8월까지의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 민간 파견자 24명과 정부 파견 공무원 26명 등 50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민간 파견자 16명과 공무원 19명 등 35명으로 축소하였으며 규제개혁기획단장은 규제개혁조정관이 겸임
- 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 정비방안을 검토·협의를 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자문단과 규제개혁기획단장 산하 규제개혁실무협의회를 운영
- 자문단과 협의회는 경제단체 및 기업 임원, 기획단 및 각 부처실·국장급으로 구성
- 규제개혁기획단은 출범 초기에는 기획총괄·교육·문화, 노동·보건, 환경의 3개 TF(task force)가 속한 기획총괄팀, 산업·자원·농림,

물류·유통·해양, 서비스 산업의 3개 TF가 속한 규제개혁 1팀, 공정경쟁, 건축·토지, 금융의 3개 TF가 속한 규제개혁 2팀의 3개 팀으로 구성

- 기구 확대가 지속으로 현재는 상업 유통·물류·제조업·건설·토지 부문을 담당하는 경제규제 1팀, 정보통신·금융·서비스업 부문을 담당하는 경제규제 2팀, 사회·문화·행정·교육 부문을 담당하는 사회문화팀, 후속조치 이행관리 및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 이행관리팀과 총괄과의 5개 팀이 되었고 이들을 기획단장 휘하의 규제개혁기획관이 통할

-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혁 추진절차(<그림 5> 참조)

| 그림 5.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혁 추진절차 |



자료: <http://www.rrtf.go.kr/intro/intro21.jsp>

- 규제개혁기획단은 피규제대상인 일반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의 건의나 제안을 수렴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되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는 핵심 덩어리 규제들은 규제개혁기획단이, 부처별로 처리할 수 있는 개별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처별 규제개혁추진단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논의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 부처의 국·과장 등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처협의를 거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 개선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과정을 거치고 있고,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는 법령을 제·개정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규제개혁의 실행을 확인

○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 이원화 이유

-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조정관실만으로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함.
- 규제개혁도 개혁이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고, 정부 내 부처 간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하여 광범위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장관들이 총리와 함께 해당 규제개혁 사안들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이원적 추진체계를 출범시킴.
-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력, 예산, 전문성 등에 존재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원화

- 국회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2004. 7 ~ 2005. 6)
 - 사상 초유로 2004년 7월 여야 합의에 입각하여 한시조직으로 국회가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6월 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노력
 - 이 위원회는 경제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단체 등의 건의과제들을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경주
 - 그렇지만 이를 규제개혁추진체계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이 위원회가 국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사항 가운데 국회 규제심사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규제관련 법률의 제 개정 시 규제영향분석 첨부 의무화, 규제일몰제의 원칙적 의무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목록 제출 의무화 등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국회의 의원입법을 통한 사전규제심사 우회를 해결하는 진전이라고 평가됨.⁴⁾

2. 규제관리시스템의 변천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관리시스템

- 규제법정주의(제4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제6조), 규제영향분석(제7조), 규제일몰제(제8조), 의견수렴(제9조),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제19조)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20조)

4) 자세한 내용은 제245회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참조할 것.

및 시행(제21조), 조직정비(제22조), 규제개선 점검·평가(제34조), 규제개혁백서의 발행(제35조) 등을 규정

- 규제법정주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제4조 제3항)고 규정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무효라는 것을 선언

- 규제의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제4조 제1항), 규제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격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 하위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음(제4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동 위원회가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제6조 제1항), 위원회의 직권조사로 미등록 규제가 발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제6조 제2항)은 진일보한 규제정보의 관리 및 전달 체계의 확보라고 평가됨.

- 규제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공표는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들- 규제의 입안자(부처), 심사자(규제개혁위원회), 입법자(국회), 집행자(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피규제대상(일반국민, 기업) 등-에게 적합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순응과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합리성과 기대되는 편익과 발생 하는 비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해 규제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를 의무화함(제7조 제1항).
 -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 규제의 신설·강화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규제의 시행에 따라 피규제대상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 예산의 소요,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 규제일몰제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간을 규제를 도입하는 시점부터 규정하여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 번 규제가 도입되고 나면 그 규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유효성이나 합리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시켜 피규제대상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능력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계속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당해 법령 등에 명시(제8조 제1항)
 - 존속기한은 규제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제8조 제2항)
 -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 규제의 신설·강화 시 중앙행정기관의 또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 할 때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 도래 1년 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제8조 제3항).

-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 규제의 신설·강화 시 중앙행정기관의 중요규제나 긴급한 심사를 요하는 규제의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존속기간의 설정을 권고할 수 있음(제8조 제4항)
- 의견수렴은 규제의 타당성과 순응(Compliance)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수단임. 『행정규제기본법』은 제9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의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그 수단으로는 법이 명시한 공청회, 행정상의 입법예고 외에도 전문가심사(peer review), 자문(consultation), 청문(hearing) 등의 과정이 이용
- 기존규제의 정비와 관련된 『행정규제기본법』의 조항들:
- 제1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규제를 선정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하고(제1항)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제2항, 시행령 제13조)
 - 제20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매년 중점 규제개혁 분야와 특정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부처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며(제2항),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득하여 내용을 공포(제3항)
 - 정비지침에는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중점 추진 규제 분야 또는 특정 기존규제,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며(시행령 제14조 제1항), 이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규제정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14조 제3항)
 - 제21조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과 그 결과 보고 규정

- 여타 정부개혁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기존규제의 정비가 이뤄지고 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제22조 제1항), 이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규제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제22조 제2항)

- 규제개선 점검 및 평가

-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난 후 사후적으로 필요한 후속조치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행정품질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일부
- 규제개혁이 가져오는 파급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변화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제34조 제1항), 이 결과에 대한 평가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 제2항). 또한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제34조 제3항), 확인·점검에 따른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제34조 제4항)

- 규제개혁백서의 매년 발행 의무화

- 규제개혁의 진전 상황을 규제개혁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규제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변화된 규제환경에 쉽게 순응할 수 있도록 발간

III. 문제점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 추진체계의 이원화

- 규제개혁위원회와 중복되는 임의적인 정부조직으로 규제 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한 것은 항구적인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정부 내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중복과 비전문성을 강화하여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실무추진 주체인 규제개혁기획단 단장을 규제개혁조정관이 맡도록 하고 있고 기획단의 인력은 각 부처의 파견인력과 기업체 및 출연기관 파견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정부 내에서의 이원화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시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규제완화(deregulation)나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control) 단계에서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의 단계로 진척하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큼.⁵⁾

5) 규제완화란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부문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규제개혁의 초기단계에서 주류를 이룬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급격한 폐기가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품질관리의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규제 각각의 개별적 품질을 높임으로써 피규제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순응(compliance)을 이끌어내고, 규제시행(regulatory enforcement)의 비용을 축소하는 개혁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단계에서는 기존 제도에 존재하는 개별 규제의 합리성과 시행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도록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규제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규제의 도입·시행·폐기의 모든 단계에 준수

□ 입법부를 통한 규제 우회적 도입 방지 장치의 결여

-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와 규제영향평가제도도 인해서 규제의 도입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워지자 규제의 공급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나 이익집단이 국회의원들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로 규제를 도입하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
-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던 정부의 역할이 3권분립의 강화로 인해서 약화되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시점에서는 향후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 전문성·인력·예산의 부족

-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각계 명망가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규제개혁 전문가의 참여는 일부에 국한되고 있으며, 위원은 상시직이 아님. 또한 정부위원은 대개 장관, 민간위원들은 각계를 대표하는 명망가임. 따라서 규제개혁이나 규제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또 위원들이 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할 인센티브도 없음.
- 규제개혁조정관실은 국무조정실의 1개 조정관실로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업무영역이 독자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순환근무를 지속함으로써 보좌사무조직의 전문성 보완도 쉽지 않은 실정임.

을 제고, 시장기구의 이용을 포함하는 규제대안의 모색 등을 통해서 규제시스템 전체의 비용 최소화와 최적규제(optimal regulation) 유지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규제의 최적대응을 실현해 나간다. 이러한 규제개혁 단계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Parker(1999), p.4를 참조할 것.

- 규제개혁 영역은 전 행정부 행정조직의 모든 업무에 걸쳐서 광범위한 데 비해 그 인원과 예산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정상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추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
 - 민간부문의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경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이나 예산, 그리고 예산 재정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의 조직이나 예산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규제개혁을 위한 예산이나 조직은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규제도입에 대한 사전심사, 규제일몰제도, 규제영향평가 등 더욱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조직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일차적인 선결과제

□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 체계

-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로 인해서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명령통제 형태의 중앙집중식 정부운영의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규제사무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과 관련한 업무를 통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와 역할분담이나 협력에서도 문제점을 노정
- 지방자치의 강화가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경쟁으로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아울러 상설화된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개혁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

□ 공공부문 개혁의 통합적 관리체계 결여

- 규제개혁은 민영화, 정부조직개편, 재정·세제개혁 및 전자정부의 구현 등과 함께 중요한 공공부문 개혁 추진 수단인데 현재까지 추진된 공공부문 개혁은 이러한 부문별 개혁 추진이 동일한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면서도 각각 배타적인 형태로 이뤄져서 그 효과와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문제점을 노정
- 규제개혁은 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변경하는 역할을 하고, 민영화는 정부기능의 민간화로 인한 축소를 의미하며, 전자정부의 구현도 과거 인력이 담당해야 했던 다양한 업무를 버추얼 공간이 담당하게 되므로 다양한 정부업무의 변경과 기능 및 인력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므로 규제·예산 및 재정·공무원 인원·정부 조직 및 기능 전자정부의 연계 개혁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의 실질적인 최고위 협의 및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2. 규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 규제영향분석의 유명무실화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자와 피규제대상을 포함한 규제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규제의 타당성과 합리성

을 파악하고 규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의 핵심 소프트웨어로 신설 강화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 규제영향분석의 주체인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의 분석능력이 부족한 상태. 규제영향분석이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일거리를 늘리는 귀찮은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서 규제영향분석은 행정적 요식절차로 전락해 가고 있음.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지침이 어렵고 불명확하며 추상적이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재의 지침은 전문가들이 바람직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망라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때로는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
- 형식적인 분석서 작성이 반복됨으로써 모범례가 축적되지도 않았고 분석서를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이를 작성하는 소관 부서 간에도 피드백(feedback)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통한 지침의 개선도 이뤄지지 못함.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교육도 단순히 분석과 관련된 절차, 지침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의 필요성 등 총론에 대해서만 이뤄짐으로써 분석기법에 대한 충분한 전수가 어려운 실정. 이렇게 분석기법에 대한 충분한 전수가 불가능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분석서가 전달하는 정보가 규제의 도입이나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음.

- 규제영향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해당 공무원의 업적평가에도 이것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못한 상태.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경우 전문가를 고용하여 분석을 충실히 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분석을 행할 적절한 시간과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서 심사를 위한 전문성 부족.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진위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심사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성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의 소관 공무원들이 상호협력과 피드백을 통해서 유인일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도입과 집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호협력과 피드백 과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

□ 효과적 규제 관리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의 부실

- 현행 규제등록제도는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규제정보시스템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수요자들이⁶⁾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시스

6) 규제정보의 수요자로는 규제의 입안자(drafter), 심사자(reviewer or ex-ante evaluator), 입법자(decision maker), 집행자(implementor), 사후심사자(ex post evaluator)와 피규제대상(the regulated)이 있다. 규제정보시스템의 수요자들과 규제정보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종석 외(1999) 제3장 제3절 "규제등록사무 개선방안"을 참조할 것.

템이 구축되어야만 함.

○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 규제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 규제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 규제를 등록하는 단위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서 규제의 규모나 중요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주된 규제와 이러한 주된 규제로부터 파생한 부수적 규제가 동일한 단위로 등록됨으로써 실제 규제총수에 대한 규모의 파악이 어려움은 물론 특정 규제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문제를 노정
 - 현행 규제등록제도는 규제의 입안자(부처), 심사자(규제개혁위원회), 입법자(국회), 집행자(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피규제대상(일반국민,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심사자 중심적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규제등록의 내용이 부실하여 규제관련 수요자들의 필요에 부응하기에는 상당히 큰 한계를 노정
 - 이와 더불어서 현행 규제등록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제정보에 대한 연계의 미흡으로 인해서 규제정보의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규제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함.
- 이러한 규제등록제도의 문제점은 결국 효율적이고 최적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식적 규제개혁 관련 교육·훈련

- 규제개혁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이해와 인지도의 제고가 중요
- 현재 공무원에 대한 규제와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훈련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 이는 결국 규제개혁이 이뤄지거나 신규로 규제가 도입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 그 집행을 어렵게 하여 규제개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실현하려던 편익을 축소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됨.
- 이렇게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이 형식화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미비에 기인

□ 규제총량제 및 규제일몰제의 형식적인 시행

-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온 규제일몰제와 2004년부터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규제총량제의 시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현재 규제의 총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지속
 - 1998년 정부의 각 부처가 등록한 총규제수는 1만1,125건 이었고 김대중 정부의 1차 규제개혁이 완료된 1998년 말에는 이것이 6,820건으로 축소. 다시 2차 규제개혁이 완료된 1999년에는 6,308건으로 축소.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총규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11월 말 현재는 8,083건⁷⁾

7) 이에 대해서 정부는 현대국가의 다양한 역할증대로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규제수 증가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행정수요 증가에 기인한 규제수 증가의 추세가 보편적일지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수의 증가는 규제의 총

- 지속적인 총규제수의 증가는 규제개혁을 아무리 정부가 대적으로 시행하여도 그 효과를 축소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
 - 이렇게 총규제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이유는 규제일몰제의 시행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서 규제도입 당시 그 시한이 정해졌던 규제들이 그 시한을 특별한 저항 없이 연장된 데 기인
 - 2004년 이후 도입된 규제총량제는 규제의 신설·강화 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되 그 총량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총규제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결됨.

수가 조만간 과거 수준으로 복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 말 당시 규제 개혁 이후의 규제개혁 실적을 토대로 분석을 행하였을 때 규제품질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신설 및 강화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구체적인 내용은 이주선 외(2000)를 참조할 것). 그러므로 지속적인 규제의 증가는 결국 다시 규제에 의한 폐해를 가중하는 문제점을 발생케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V. 개선방안

1.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 행정부 규제 개혁추진체계의 확대 강화

- 「행정규제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획예산처와 같은 독자적 정부조직으로 출범시키고 그 보좌사무조직도 위원회의 하부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
- 이럴 경우 위원회의 소속은 현행과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의 1개 부서가 규제개혁 보좌 및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행정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행정 각부의 통할과 조정을 담당하는 총리실이 정부 각 부처의 기능조정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개폐를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고도 적절한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 그런데 현재 나타난 바는 실질적인 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해서 중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소위 핵심규제 또는 정책적규제의 개혁이 지지부진함을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지방자치를 주무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폐지와 규제개혁위원회 흡수를 축으로 하는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직의 신설이나 인원의 증원 없이 상당한 부

분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독립성 제고와 확대 강화가 가능

-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설화와 정책연구 기능 확대
 - 행정규제의 단초가 되는 법 제정 단계에서 규제도입의 비용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지금까지 법의 제정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상임위원회들이 해당 법의 이해관계나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지도 못하고 법사위원회는 법률적인 검토에 치중하게 되어 규제의 비용편익에 대한 고려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고 있지 못함.
 - 국회 내에 행정부가 발의하거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모든 법안의 규제관련 조항들에 대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행정 및 입법 품질관리 기능을 가진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국회는 예산심사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예산정책처라는 연구조사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과 함께 법안에 포함된 규제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추가하여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조사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가칭 “예산/규제정책연구단”을 설치
-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설 전문 정부조직화
 -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과 같이 독자적인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경우, 규제개혁위원은 공

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상임위원회하고 그 임명은 대통령령이 하며 임기가 보장되는 직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보좌사무조직도 독자적인 정부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규제관리와 규제개혁이 그 고유업무 영역인 인력을 확보
 - 행정규제의 단초가 되는 법 제정 단계에서 규제도입의 비용효과에 규제영향평가서를 심사하고 신설규제의 사전심사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검토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가 있어야 하며 규제개혁이 해당 공무원 업무추진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점하도록 하여야 함.
 -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예산, 정부조직개편,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제도화와 중앙-지방 간 공조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강화와 함께 중앙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의 목표, 당위성, 그리고 추진을 위한 노하우 등을 다양하게 전수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담당 인력의 규제관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가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나 권한상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데 도움
 -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담당기구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상호협력과 피드백 시스템

템을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 간의 수직적 명령-통제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편

- 총체적 공공부문 개혁 관리 고위 심의기구의 상설 운영
 -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와 팀제로 운영되는 각 부총리 들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운영
 - 이러한 고위 심의기구는 각각의 공공부문 개혁으로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한 기능·인력·예산 및 재정 조정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임.

2.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방안 강구
 - 담당 공무원들의 규제영향분석 능력의 제고 필요
 -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이 왜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요하며 규제영향 분석이 정책실패를 줄이고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임.
 -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의의를 인식시키고 규제영향분석의 시행으로 정책이 성공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 담당 공무원들과의 작

성과 심사과정에서 피드백을 행하여 규제영향분석 지침을 더욱 쉽고 명료하고 구체적이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

- 규제영향분석서의 모범례를 축적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활용함은 물론 자신들의 창의적인 방법들을 규제영향분석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모범례를 활용할 경우 이들을 통해서 도출된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들은 지침에 통합하여 지침의 직접적인 활용자인 담당 공무원들에게 더욱 유용한 지침이 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분석기법의 전수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함.

- 영향분석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업무평가에서 영향분석이 적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용

- 영향분석서를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이를 작성하는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상호협력을 통해서 유인일치적 방식으로 특정한 규제의 도입과 집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사전심사과정이 운영되고 규제영향분석도 할 수 있도록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

□ 규제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규제지도 완성

○ 규제등록 및 공표 개선사항

- 규제등록 및 공표는 더욱 광범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확대

-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제정보는 정부업무의 전체적인 그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규제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규제사무목록과 일부 1차적인 통계만으로는 구성되어 있는 현재보다 복합적이고도 풍부한 정보를 담도록 개선되어야 함.

- 규제정보시스템의 이용자 중심 재편

- 규제의 입안·심사·입법·평가·집행단계에서 규제의 생산·공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규제정보는 자신의 업무를 더 효과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어야 함.
- 규제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거나 또는 특정한 이익을 받게 되는 일반 국민과 기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가 어떠한 형태의 것이며 이에 부응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에 대처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공무원과 같은 규제 시행자를 제외한 정부규제의 생산·공급자들에게도 개별 규제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이나 규제의 집행에 수반되는 모든 개별규제의 총화로서의 규제체계 또는 규제지도(regulatory map)는 자신이 담당하는 규제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함.
- 이용자들 각각의 요구에 부응하는 규제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단순 규제사무목록의 제공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들과 규제등록전산화 정보의 연계와 검색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서 법제처의 법률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운용하는 공공부문 개혁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이로부터 종합적인 규제지도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

- 현행 규제등록체계에 규제지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정보를 전산화

- 규제지도의 파악이 가능한 방법으로 현행 규제등록의 방법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현재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자료의 축적은 이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한 규제등록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함.
 - 현행 규제등록체계 안에서 규제지도의 작성이 가능한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한 법령이 규율하는 각종 민간 활동에 대한 코드(code)화가 전제
- 등록규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의 용이성과 정보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고급화
- 단순히 법령의 조문, 규제의 내용 또는 목록만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관심을 가진 주제를 입력하면 그 주제에 관련된 정보가 다양하게 검색되는 형태의 법령 및 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
 - 즉, 다양한 주제어 검색과 1차검색에 이어지는 2차, 3차 참고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규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중요
- 규제의 등록번호에 다시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를 제시하는 방법을 써서 현재의 규제등록 체계를 보완
- 예컨대 현재 5개의 규제가 함께 묶여서 단위 규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5개의 다른 네자릿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번호 뒤에 -1, -2, -3, -4, -5의 5개 추가번호를 부여하여 개수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규제의 등록은 원래의 수대로 등록하는 방안을 채택
- 현재 존재하는 모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재검토하여 등록이 누락된 규제를 시급히 추가등록

- 현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실태에 의하면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이 비규제로 분류하여 등록을 누락시키고 있는 규제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이들이 비규제로 분류되어 관리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작업은 대단히 시급하고도 중요
- 이러한 보완을 통해서 규제단위가 분명해지면 규제심사와 규제과정을 기술하는 규제지도의 작성이 가능

□ 규제 및 규제개혁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와 체계화

- 공무원들의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이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교육 훈련이 아니라 규제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
- 규제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교육은 직무교육 가운데 가장 중점적인 학습 및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하위직이나 지방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왜 규제개혁과 효과적인 규제관리의 시행이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담보하는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도록 조치

□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통한 총규제수 관리

- 주기적으로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3년 내지 5년에 1회 정도 그 존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일몰제가 적용된 채 도입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강력한 일몰제의 시행

- 이렇게 폐기된 규제를 재도입하고자 할 경우 입법사항의 경우 국회에서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과정을 원안부터 시작하도록 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도 신설 강화규제와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조치
- 규제총량제도 자율적으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 정연도의 규제수를 상한으로 하여 총량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
- 총량의 관리는 부처별로 행할 경우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 하는 적정 규제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정 부의 총규제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대신 각 부처 가 운데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불가피한 부처는 규제수를 늘리고 규제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부처는 규제를 줄이는 형태의 규제총량제 운용이 필요

「 참고문헌 」

- 규제 개혁기 획단 홈페이지(<http://rrtf.go.kr/intro/intro03.jsp>)
규제 개혁기 획단 홈페이지(<http://rrtf.go.kr/intro/intro21.jsp>)
규제 개혁위원회, 『규제 개혁백서』, 각호, 1999~2005.
규제 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제245회 임시국회)
김일중·홍성중, 『한국의 규제완화 추진체계』, 한국경제연구원, 1994.
김정수, 『우리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 『규제완화』 7장 간호, 한국경제연구원, 1992.
김종석 외,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 및 규제개혁 발전방향』, 규제연구회, 1999.
이주선·최병선·한선옥,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와 개혁방안』, 서강경제인포럼, 2000.
이주선·한선옥, 『김영삼 행정부의 규제완화 실적평가』, 한국경제연구원, 1999.
- Parker, C.,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Issues, Trends and Challenges," PUMA/REG(99)3, OECD, 1999.